

2019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 : 평창군수

2019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 4. 17 ~ 5. 6(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심현정(평창군의회 의원)
 - 검사위원 : 조상현(전직 공무원)
 - 검사위원 : 신종해(전직 공무원)
 - 검사위원 : 신창덕(전직 공무원)
 - 검사위원 : 유동근(전직 공무원)

제출자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평창군수 귀하

2020년 5월 6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평창군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평창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빙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심현정



검사위원 조상현



검사위원 신종해



검사위원 신창덕



검사위원 유동근



목 차

1. 재정여건	2
2. 세입·세출결산	3
1) 총괄	3
2) 일반회계	4
3) 특별회계	8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0
5) 예비비 지출	13
3. 기금결산	14
4. 재무제표결산	15
5. 성과보고서	18
6. 결산서 첨부서류	19
7. 금고결산	21
8. 결산검사결과	22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477,191	554,428	649,931	579,174	640,249	7.6	
세출(B)	366,730	414,194	505,387	470,258	518,499	9.0	
잉여금 (A-B)	소 계	110,461	140,234	144,544	108,916	121,750	2.5
	이 월 금	89,510	111,680	106,303	76,618	92,053	0.7
	보 조 금 실제반납금	2,282	2,599	2,856	2,637	3,930	14.6
	순 세 계 잉 여 금	18,669	25,955	35,385	29,661	25,767	8.4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4% 높고, 잉여금은 5년 평균증가율 2.5% 임.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년	3,199,414	33,785	3,165,629	499,059	371,304	(127,755)
2018년	3,066,892	31,894	3,034,998	411,875	335,107	(76,768)
증감	132,522	1,891	130,631	87,184	36,197	(50,987)

- 2019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대비 130,631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30%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0,987백만원 (66.42%) 감소하였음.

2. 세입·세출결산

(1) 총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 (A)	세출 (B)	잉여금(A-B)			
				소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626,704	640,249	518,499	121,750	92,053	3,930	25,767
일반회계	564,946	575,273	464,375	110,898	85,001	3,901	21,996
특별회계	61,758	64,976	54,124	10,852	7,052	29	3,771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740	36,330	31,115	5,215	2,332		2,883
기타특별회계	28,018	28,646	23,009	5,637	4,720	29	88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6	499	477	22		18	4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66	269	234	35	32		3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309	1,309	1,240	69			69
수질개선 특별회계	25,618	26,265	20,754	5,511	4,688	11	812
주택사업 특별회계	319	304	304	0			

-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640,249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3,545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총세출은 총세입의 81%인 518,49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잉여금은 121,750백만원 임.
- 이중, 명시이월비 59,370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833백만원 미포함), 사고이월비 14,547백만원, 계속비이월 18,136백만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3,930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67백만원 임.

(2) 일반회계

가. 세입

<세입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564,946	580,628	575,273	1,158	4,197
결산확인액	564,946	580,628	575,273	1,158	4,197
차 액	0	0	0	0	0

- 예산현액은 564,946백만원이며, 580,62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75,273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1,158백만원, 미수납액 4,197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75,273,122,501	575,273,122,501	0

※ 금고 출납계산서와 수납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년대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9년도	564,946	580,628	575,273	1,158	4,197
2018년도	507,866	524,726	519,260	849	4,617
증 감	57,080	55,902	56,013	309	△420

- 전년대비 수납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1%이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10.8%가 증가한 575,273백만원 임.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309백만원이 증가한 1,158백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배분금부족 57백만원, 체납처분중지 29백만원, 시효소멸 30백만원, 행방불명 17백만원, 무재산 496백만원, 채무자회생법에의한 면제 93백만원, 평가액부족 436백만원 임.
-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420백만원 감소한 4,197백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89백만원, 행방불명 21백만원, 납세태만 2,954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101백만원, 소송계류 27백만원, 국외이주 47백만원 자금압박 143백만원, 기타 815백만원 임.

<과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564,946	580,628	575,273	1,158	4,197
지방세	30,430	35,873	32,368	835	2,670
세외수입	19,159	24,218	22,373	323	1,522
지방교부세	280,392	284,678	284,678	0	0
조정교부금등	10,417	12,546	12,546	0	0
보조금	131,974	130,742	130,742	0	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92,574	92,571	92,566	0	5

- 과목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4,741백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5%이며, 지방교부세는 284,678백만원으로 49.5%를 차지하고 있음. 조정교부금은 2.2%인 12,546백만원, 보조금은 130,742백만원으로 2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2,566백만원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음.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9.5%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74.4%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나. 세출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결산액	564,946	464,375	85,834	3,892	10,845
결산확인액	564,946	464,375	85,834	3,892	10,845
차액	0	0	0	0	0

- 예산현액은 564,946백만원이며, 464,375백만원을 지출하고 85,83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892백만원과 집행잔액 10,845백만원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함.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464,375,131,033	464,375,131,033	0

※ 금고 출납계산서와 지출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년대비 세출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2019년도	564,946	464,375	85,834	3,892	10,845
2018년도	507,866	427,736	65,195	2,615	12,320
증 감	57,080	36,639	20,639	1,277	△1,475

- 국고보조금 등 확보에 따라 예산현액이 증가하면서 지출액은 전년대비 8.6% 다음연도이월액은 전년대비 31.7%가 각각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277백만원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475백만원 감소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85,834백만원으로
 명시이월 56,955백만원, 사고이월 14,547백만원, 계속비이월 14,332백만원 임.
- 집행잔액은 10,845백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정산잔액 2,809백만원, 예산절감액 236백만원,
 계획변경등집행잔액 203백만원, 낙찰차액 41백만원,
 지출잔액 6,293백만원, 예비비 1,263백만원 임.

<기능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지출액	2019회계연도			전년대비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계	427,736	564,946	464,375	100	36,639	8.6
일반공공행정	39,110	32,408	29,939	6.4	△9,171	△23.4
공공질서및안전	9,867	16,759	12,343	2.7	2,476	25.1
교육	2,220	3,648	3,575	0.8	1,355	61.0
문화및관광	61,869	84,469	59,998	12.9	△1,871	△3.0
환경보호	29,326	40,681	38,437	8.3	9,111	31.1
사회복지	56,513	77,063	69,921	15.1	13,408	23.7
보건	13,842	11,691	10,808	2.3	△3,034	△21.9
농림해양수산	70,391	119,465	95,458	20.6	25,067	35.6
산업·중소기업	4,466	16,465	8,622	1.8	4,156	93.1
수송및교통	18,279	28,737	25,535	5.5	7,256	39.7
국토및지역개발	68,908	76,835	55,463	11.9	△13,445	△19.5
예비비	0	1,263	0	0	0	0
기타	52,945	55,462	54,276	11.7	1,331	2.5

- 기능별 결산현황을 보면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95,458백만원(20.6%),
 사회복지 69,921백만원(15.1%), 문화및관광 59,998백만원(12.9%)
 등이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으로
 기업유치 지원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확인됨.

(3) 특별회계

가. 세입

<세입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61,758	65,434	64,976	0	458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740	36,658	36,330	0	328
기타특별회계	28,018	28,776	28,646	0	13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6	500	499	0	1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66	269	269	0	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309	1,309	1,309	0	0
수질개선 특별회계	25,618	26,394	26,265	0	129
주택사업 특별회계	319	304	304	0	0
결산확인액	61,758	65,434	64,976	0	458
차 액	0	0	0	0	0

- 예산현액은 61,758백만원이며, 65,43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4,976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58백만원이 발생하였음으며, 미수납액은 대부분 상하수도사용료로 확인 됨.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4,976,212,952	64,976,212,952	0

※ 금고 출납계산서와 수납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 세출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계	61,758	54,124	7,052	29	553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740	31,115	2,332	0	293
기타특별회계	28,018	23,009	4,720	29	26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6	477	0	18	11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66	234	32	0	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309	1,240	0	0	69
수질개선 특별회계	25,618	20,754	4,688	11	165
주택사업 특별회계	319	304	0	0	15
결산확인액	61,758	54,124	7,052	29	553
차액	0	0	0	0	0

- 예산현액은 61,758백만원이며, 54,124백만원을 지출하고 7,05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9백만원과 집행잔액 553백만원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함.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4,124,476,594	54,124,476,594	0

※ 금고 출납계산서와 지출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32건			6,727,753	1,344,240	1,344,240		
총무담당관	평창군기록관 운영관리	201-01	9,980	3,700		2019-11-21	복합기 구입 예산확보
		405-01			3,700		
올림픽 기념사업과	국제행사 참가	310-02	10,000	2,500		2019-10-28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참가등록비 예산확보
		201-01			2,500		
“	올림픽 기념행사 국제행사 지원 및 참가(도비)	201-03	72,000	4,150		2019-11-18	2021 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세부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확보
		207-01	7,410		4,150		
“	평창평화특례시추진 국제행사 지원 및 참가(도비)	207-01	22,000	3,900		2019-11-18	
		207-01			3,900		
“	올림픽 기록정리 국제행사 지원 및 참가(도비)	207-01	33,000	3,510		2019-11-18	
		207-01	3,900		3,510		
“	평화 테마파크 조성 국제행사 지원 및 참가(도비)	207-01	300,000	19,280		2019-11-18	
		207-01	11,560		19,280		
“	국제 회의도시 유치·개최 지원	201-03	90,000	2,000		2019-02-20	2021 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유치 위한 ICG집행위 현지답사단 초청에 따른 예산확보
		301-07			2,000		
“	국제 회의도시 유치·개최 지원	201-03	88,000	19,100		2019-03-27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 포럼 개최에 따른 예산확보
		301-07	2,000		19,100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보조)	301-12	26,400	2,000		2019-12-18	사무관리비 부족 예산확보
		201-01	42,052		2,000		
허가과	주택·건축행정 건실화	301-12	30,000	20,000		2019-10-3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조치 예산확보
		401-01			20,000		
교육체육과	동계스포츠 체험교실운영용품 구입	405-01	20,000	1,000		2019-02-12	홍보비 예산확보
		201-01			1,00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교육체육과	동계스포츠택험교실운영용품 구입	405-01	19,000	1,000		2019-02-12	사업진행의 안정성을 위한 보험가입 예산확보
		201-02			1,000		
“	동계스포츠택험교실운영용품 구입	405-01	18,000	2,000		2019-02-20	교실운영 장소 확보 및 정비를 위한 장비임대 예산확보
		201-01	1,000		2,000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307-02	130,000	6,000		2019-07-03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대관령전지훈련장 물품 구입 예산확보
		405-01	155,000		6,000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201-01	55,000	20,000		2019-07-03	2019 평창스키점프 FIS CUP 대회 지원 예산확보
		307-04	550,000		20,000		
문화관광과	문화콘텐츠홍보	201-01	350,000	50,000		2019-07-23	계촌마을 클래식거리축제지원 예산확보
	문화예술공연사업	307-04	140,000		50,000		
“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402-02	716,000	100,000		2019-07-15	상원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과목 해소를 위한 전용
		307-02			100,000		
“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	201-03	127,000	11,000		2019-12-18	코레일 내일로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보상금 예산확보
		301-12			11,000		
일자리경제과	진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7-01	200,000	200,000		2019-10-22	진부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
		403-02			200,000		
환경위생과	유해야생동물관리	301-12	400,000	100,000		2019-11-18	주민수요 증가에 따라 마을단위 피해예방시설 추가 설치 예산확보
		401-01	245,000		100,000		
산림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보조)	402-02	1,050,000	210,000		2019-02-13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연계 발굴된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등의 용역 추진 예산확보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207-01	20,000		210,000		
도시주택과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보조)	307-02	265,568	265,568		2019-06-20	군직영 대중교통(공영 마을버스)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과목 해소
		201-01			265,568		
“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보조)	307-02	320,000	54,432		2019-06-20	군직영 대중교통(공영 마을버스)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과목 해소
		101-04			54,432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주택과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보조)	405-01	280,000	18,000		2019-06-20	직영 대중교통(공영 마을버스)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과목 해소
		101-04	54,432		18,000		
“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보조)	405-01	262,000	68,000		2019-06-20	
		201-02			68,000		
보건의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보조)	307-05	50,900	10,000		2019-09-20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예산확보
		401-01			10,000		
농업기술센터	한우품질개량 한우품질고급화 (도비)	206-01	10,000	10,000		2019-10-04	한우품질 고급화(인공수정료) 지원 예산확보
		301-12	54,800		10,000		
“	한우품질개량 한우품질고급화 (도비)	301-12	150,000	30,000		2019-10-04	
		301-12	64,800		30,000		
“	긴급방역(도비)	201-01	42,000	19,500		2019-10-04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지원 기간제인건비 예산확보
		101-04			19,500		
“	절임배추 농가 육성지원	307-02	125,400	9,600		2019-10-17	절임배추 품질 홍보용 스티커 직접 제작에 따른 예산과목 해소
		201-01			9,600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원(도비)	206-01	18,000	18,000		2019-08-13	예찰방제단의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3명) 예산확보
		101-04	24,000		18,000		
도시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민주택지원	201-01	61,551	60,000		2019-02-12	국민주택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과목 해소
		401-01			60,000		

○ 2019회계연도 예산전용은 32건 1,344,240천원을 전용하였음을 확인함.

다. 예산이체

○ 2019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45건에 3,352,211천원을 이체하였음을 확인함.

(5) 예비비 지출

가. 총괄조서

(단위 : 천원)

회 계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지출잔액 라=가-나-다
	합 계	1,921,182	658,414	207,025	428,403	22,986
일반회계	801-01 일반예비비	921,182	97,904	76,818	0	21,086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00,000	560,510	130,207	428,403	1,900
	801-03 내부유보금	0	0	0	0	0

- 2019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921,182천원으로 주민투표사업 외 7건 658,41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07,025천원을 지출하고 428,40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2,986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3. 기금결산

2019회계연도 기금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23,275	110	3,620	3,510	23,385
평창군통합관리기금	8,145	△1,980	139	2,119	6,165
평창군사회복지기금	7,910	830	902	72	8,740
평창군체육진흥기금	4,498	△124	86	210	4,374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27	△16	39	55	111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60	60	0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029	351	1,345	994	1,380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58	27	27	0	85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508	1,022	1,022	0	2,530

- 2019년도 말 기금현황은 평창군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3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385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10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이 주요 수입원임.
- 2019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은 3,510백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4. 재무제표 결산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18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 산	3,199,414	100.00	3,066,892	100.00	132,522	4.32
유동자산	141,669	4.43	125,976	4.11	15,693	12.46
투자자산	3,065	0.10	3,293	0.11	△228	△6.92
일반유형자산	184,612	5.77	171,225	5.58	13,387	7.82
주민편의시설	402,368	12.58	369,433	12.05	32,935	8.92
사회기반시설	2,465,286	77.05	2,395,252	78.10	70,034	2.92
기타비유동자산	2,414	0.08	1,713	0.05	701	40.92
부 채	33,785	100.00	31,894	100.00	1,891	5.93
유동부채	6,587	19.50	4,267	13.38	2,320	54.37
장기차입부채	16,025	47.43	16,025	50.24	0	0
기타비유동부채	11,173	33.07	11,602	36.38	△429	△3.70
순자산	3,165,629	100.00	3,034,998	100.00	130,631	4.30
고정순자산	3,030,150	95.72	2,920,997	96.24	109,153	3.74
특정순자산	17,838	0.56	16,005	0.53	1,833	11.45
일반순자산	117,641	3.72	97,996	3.23	19,645	20.05

- 2019년도말 평창군의 자산은 3,199,41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2,52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임.
- 2019년도말 평창군의 부채는 33,78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9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임.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18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비용총계	371,304	100.00	335,107	100.00	36,197	10.80
인건비	66,180	17.82	64,581	19.27	1,599	2.48
운영비	144,263	38.85	133,246	39.76	11,017	8.27
정부간이전비용	6,704	1.81	6,648	1.98	56	0.84
민간등이전비용	106,940	28.80	92,296	27.54	14,644	15.87
기타비용	47,217	12.72	38,336	11.45	8,881	23.17
수익총계	499,059	100.00	411,875	100.00	87,184	21.17
자체조달수익	68,240	13.67	61,310	14.89	6,930	11.30
정부간이전수익	430,818	86.33	350,447	85.09	80,371	22.93
기타수익	1	0.00	118	0.02	△117	△99.15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127,755)		(76,768)		(50,987)	

- 2019회계연도 평창군의 총비용은
371,30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19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운영비,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 증가에 따른 것임.

- 2019회계연도 평창군의 총수익은
499,0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18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수익, 보조금수익 증가에 따른 것임.

가. 채권결산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3,474,706	2,139,577	2,412,154	3,202,129
일반회계	2,808,993	2,139,577	2,087,437	2,861,133
특별회계	29,313	0	29,313	0
기 금	636,400	0	295,404	340,996

○ 2019년말 보유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474,706천원에서 당해연도에 2,139,577천원이 발생하고
2,412,154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02,129천원 임.

나. 채무결산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6,025,000	4,800,000	4,800,000	0	20,825,000
일반회계	15,025,000	0	0	0	15,025,000
기타회계 (수질개선)	1,000,000	0	0	0	1,000,000
기타회계 (농공단지)	0	4,800,000	4,800,000	0	4,800,000

○ 2019년말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현재액 16,025,000천원에서
당해연도발생액은 4,800,000천원이며, 소멸액은 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825,000천원 임.

5. 성과보고서

○ 성과목표(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별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9	69	135	27	70	38	487,384
기 획 담 당 관	1	2	8	1	7	0	7,879
총 무 담 당 관	1	4	7	2	4	1	56,208
올림픽기념사업과	1	1	3	1	2	0	4,438
주 민 복 지 과	1	10	18	1	9	8	64,784
총 합 민 원 과	1	2	2	0	2	0	1,874
재 무 과	1	2	3	0	3	0	7,060
허 가 과	1	2	2	0	1	1	193
교 육 체 육 과	1	5	9	2	6	1	11,140
문 화 관 광 광	1	4	12	2	2	8	33,182
일자리경제과	1	6	9	2	3	4	15,060
환 경 위 생 과	1	5	6	0	4	2	43,290
산 림 과	1	2	7	2	3	2	21,437
안 전 건 설 과	1	6	14	5	5	4	75,335
도 시 주 택 과	1	4	8	3	3	2	32,120
시 설 관 리 과	1	2	5	2	2	1	16,081
보 건 의 료 원	1	4	6	1	4	1	11,729
농업기술센터	1	5	12	3	7	2	61,127
의 회 사 무 과	1	1	1	0	1	0	955
상하수도사업소	1	2	3	0	2	1	19,028
읍 면	0	0	0	0	0	0	4,464

※ 결산액 : 일반+기타특별회계

6. 결산서 첨부서류

(1)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1,137,173	375,397	5,850,839	5,475,442	1,512,570
보증금	227,302	69,124	98,960	29,836	296,426
보관금	849,278	297,300	5,514,981	5,217,681	1,146,578
잡종금등기타	60,593	8,973	236,898	227,925	69,566

- 2019연도말 세입세출외현금현재액은 전년도말현재액 1,137,173천원 보다 375,397천원이 증가한 1,512,570천원으로 보증금 296,426천원 보관금 1,146,578천원, 잡종금등기타가 69,566천원 임.

※ 직속기관, 읍·면, 사업소를 포함한 금액임

(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용도별 현황〉

(단위 : 천원)

용도별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 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550,779,397	67,498,522	36,842,909	1,581,435,010
행정 재산	계	1,492,348,503	66,205,521	34,647,906	1,523,906,118
	공용 재산	332,352,178	5,650,353	2,421,099	335,581,432
	공공용재산	1,069,460,327	60,400,887	32,077,412	1,097,783,802
	기업용재산	90,483,297	154,281	149,395	90,488,183
	보존용재산	52,701	0	0	52,701
일	반 재 산	58,430,894	1,293,001	2,195,003	57,528,892

○ 2019연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전년도말 1,550,779,397천원에서 67,498,522천원이 증가하고 36,842,909천원이 감소하여 1,581,435,010천원 임.

- 토지 130,863,167㎡ / 602,889,021천원
- 건물 236,732㎡ / 398,374,324천원
- 기타(입목축, 공작물 등) 294,639개 / 580,171,665천원 임.

(3)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점,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계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수량	1,191	44	16	28	2	0	2	1,233
금액	10,073,074	1,161,341	132,377	1,028,964	74,084	0	74,084	11,160,331

○ 201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1,160,331천원으로 전년도말현재액 10,073,074천원 보다 1,087,257천원이 증가하였음.

7. 금고결산

(단위 : 원)

구 분	세입결산액(가)	세출결산액(나)	잔액(금고보관액) (가-나)
합 계	640,249,335,453	518,499,607,627	121,749,727,826
일반회계	575,273,122,501	464,375,131,033	110,897,991,468
공기업 특별회계	36,330,292,503	31,115,605,110	5,214,687,393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6,330,292,503	31,115,605,110	5,214,687,393
기타특별회계	28,645,920,449	23,008,871,484	5,637,048,96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9,429,639	477,551,204	21,878,4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9,537,080	233,970,000	35,567,080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308,606,782	1,240,263,760	68,343,022
수질개선특별회계	26,264,879,568	20,753,619,140	5,511,260,428
주택사업특별회계	303,467,380	303,467,380	0

○ 2019회계연도 금고결산 결과

총세입결산액은 640,249,335,453원이고, 총세출결산액은 518,499,607,627원으로 잔액(금고보관액)은 121,749,727,826원으로 NH농협은행평창군청출장소 발행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결산 금액이 일치함.

8. 결산검사결과

【총 평】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 검사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세입·세출과 관련된 회계자료와 결산내용의 기초가 되는 서류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및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 검사결과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267억원이고, 수납액은 6,402억원, 지출액은 5,185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217억원입니다.
총자산은 3조 1,994억원으로 전년대비 1,325억원, 총부채는 338억원으로 전년대비 1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05%로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납액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611억원(10.5%), 지출액은 482억원(10.2%)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4.1%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초과세입, 불용액 감소 등 재정운영이 상당부분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계 미흡 등과 관련 세입예산 편성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조금 관리 철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이월예산, 국도비 반납금 최소화 노력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그 밖에 예산전용 과다 증가 개선, 예비비 지출제한 준수, 예산의 성고보고서 작성 미흡 분야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 본 검사결과 제시된 개선 권고사항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되어 평창군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선·권고사항】

1. 세입예산편성 철저
2. 보조금 관리 철저
3.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4. 예산이월 최소화 방안 강구
5. 국도비 반납금 최소화 노력
6. 예산전용 과다 증가
7. 예비비 지출제한 준수
8.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수범사례】

1. 실효성이 미흡한 특별회계 폐지

1. 세입예산편성 철저

□ 현 황

【세외수입 세입추계 미흡 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입과목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차액 (라)=(다)-(가)	비고
합계	9건	42,500	340,818	338,824	380,324	
종합민원과	이행강제금(223-02)	35,000	0	0	△35,000	
재무과	기타사용료(212-08)	7,000	0	0	△7,000	
허가과	이행강제금(223-02)	500	73,760	73,760	73,260	
환경위생과	기타사용료(212-08)	0	69,552	69,552	69,552	
“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1)	0	137,230	137,230	137,230	수특
“	지난연도수입(225-01)	0	27,332	27,332	27,332	수특
안전건설과	일반부담금(222-02)	0	9,646	9,646	9,646	
보건의료원	과징금(223-01)	0	6,562	6,562	6,562	
상하수도사업소	일반부담금(222-02)	0	16,736	14,742	14,742	

※ 기준 : 500만원 이상

【지방교부세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세입과목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차액 (라)=(다)-(가)	비고
합계	280,991,916	285,278,195	285,278,195	4,286,279	
보통교부세 (311-01)	268,165,542	267,774,000	267,774,000	△391,542	
특별교부세 (311-02)	4,595,000	4,595,000	4,595,000	0	
부동산교부세 (311-03)	8,231,374	12,909,195	12,909,195	4,677,821	

□ 문제점

- 세외수입 중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없거나, 실제수납액은 있으나 예산현액이 없는 부서별 결산내역이 위와 같이 확인 되었으며
- 지방교부세 결산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는 실제수납액 보다 예산액이 391,542천원 많이 편성 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액이 4,677,821천원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위와 같이 일부부서의 미흡한 세입추계는 전년도 보다는 개선 되었으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세입과목별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외수입 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함.

2. 보조금 관리 철저

□ 현 황

【보조금 미착금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착금액			미착금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10개사업	3,420,853	3,131,847	289,006	3,354,966	3,080,255	274,731	65,867	51,592	14,275
주민 복지과	공공후견비용 지원(보조)	1,577	1,502	75	0	0	0	1,577	1,502	75
“	자활사업 (보조)	926,956	870,670	56,286	926,747	870,670	56,077	209	0	209
“	우수지역아동 센터 지원(보조)	4,502	3,752	750	4,266	3,555	711	236	197	39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보조)	25,968	25,968	0	25,704	25,704	0	264	264	0
일자리 경제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도비)	51,300	0	51,300	51,072	0	51,072	228	0	228
환경 위생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	82,075	56,000	26,075	62,075	36,000	26,075	20,000	20,000	
“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도비)	40,780		40,780	30,227		30,227	10,553		10,553
농업기술센터	살처분보상금 (보조)	33,750	30,000	3,750	12,296	10,930	1,366	21,454	19,070	2,384
“	조건불리 직불금(보조)	2,133,717	2,032,110	101,607	2,133,716	2,032,110	101,606	1	0	1
“	논타작물재배 지원(보조)	120,228	111,845	8,383	108,883	101,286	7,597	11,345	10,559	786

【자금없는이월 보조금 미착금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착금액			미착금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일자리 경제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보조)	25,628	24,080	1,548	0	0	0	25,628	24,080	1,548

※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 25,628천원 명시이월(자금없는이월)

□ 문제점

- 보조금은 자치단체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자금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된 예산을 착금관리하고 집행 및 결산을 해야 함. 미착금된 보조금이 전년도 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편성을 소홀히 하여 10건 65,867천원의 미착금 보조금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명시이월(자금없는 이월)된 전통시장 화재알림서비스사업비 25,628천원도 미착금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개선 권고사항

- 정리추경전 보조금 착금사항을 해당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미착금된 보조금에 대하여 미착금 사유 등을 파악하고, 변경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허수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 현 황

【전액 미집행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	예산 구분	세부사업	사업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미집행사유
		36건		1,108,153	1,108,153	
기획 담당관	본예산	○홍보대사 및 SNS 서포터즈 활동비	자체	19,800	19,800	홍보대사 초청행사 취소 및 서포터즈 활동비 지급 사유 미발생
“	본예산	○청문주재자 보상금	자체	1,000	1,000	외부청문주재자 없었음
“	본예산	○공무직근로자 직무교육 여비(기관공통)	자체	15,000	15,000	부서에서 교육여비 신청 없었음
총무 담당관	본예산	○창안제도 민간인 시상금	자체	5,000	5,000	공무원 제안건수 없었음
올림픽기념사업과	1.2회 추경	○제주포럼 평창군 세션 발표자 및 평화포럼 후속 작은포럼 초청자여비	자체	10,000	10,000	작은 포럼 미개최
“	2회추경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	자체	1,000	1,000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미개최
주민 복지과	본예산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보조	2,000	2,000	지원대상자 없음
“	본예산	○공공후견 비용 지원	보조	1,877	1,877	지원대상자 없음
“	본예산	○입양축하금 지원	보조	1,000	1,000	지원대상자 없음
“	본예산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	3,350	3,350	어린이집 수요없음
“	1회추경	○노인행사 참가 지원	자체	1,000	1,000	강원도 효도행사 취소
교육 체육과	전용	○동계스포츠 체험교실운영 홍보비	자체	3,000	3,000	집행사유 미발생 (교실 운영 미착수)
“	전용	○동계스포츠 체험교실운영관련 장비임대	자체	1,000	1,000	“
문화 관광과	사교월	○효석 문화예술촌 조성 사무관리비	자체	9,900	9,900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미시행
“	본예산	○문화재 관리 일반수용비	자체	1,200	1,200	집행사유 미발생
일자리 경제과	본예산	○에너지 절약 일반수용비	자체	2,000	2,000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	명사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보조	34,400	34,400	집행사유 미발생
환경 위생과	본예산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용역	자체	28,000	28,000	집행사유 미발생 (국립생태원 직접수행)

부서	예산 구분	세부사업	사업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미집행사유
환경 위생과	2회추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보조	5,000	5,000	신청자의 신청 취소
“	1회추경	○축제지원 이동식 화장실 유지보수	자체	5,000	5,000	신규구입으로 이동식 화장실 미보수
“	본예산	○쓰레기불법투기 및 빈병회수거부 신고보상금	자체	3,000	3,000	집행사유 미발생
“	본예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비	보조	4,200	4,200	시·군 단위 계약 불가로 전액 미집행 (식약처 예산 사용함)
산림과	본예산	○산불 및 산림외 신고포상금	자체	1,000	1,000	집행사유 미발생
안전 건설과	본예산	○위원회 및 재난구조단체 지원	자체	2,000	2,000	집행사유 미발생
“	사업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	584,000	584,000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사업포기
도시 주택과	본예산	○예쁜간판가꾸기 일반수용비	자체	4,000	4,000	집행사유 미발생
시설 관리과	명사비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 (송정2리 게이투볼장 부지)	자체	90,000	90,000	기재부소관 부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나 국유재산 매각 중단 방침에 따라 매입불가
보건 의료원	1회추경	○치매 원격진료 사업 홍보	보조	6,000	6,000	중복사업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농업기술 센터	2회추경	○가금 농가 조류퇴치 지원	보조	2,800	2,800	사업수요자없음으로 추진불가
“	본예산	○거점소독시설 운영 재료비	보조	5,087	5,087	국비추가지원에따른 잔액발생
“	본예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보조	2,600	2,600	유기동물 입양시 건강한 개체만 입양하므로 수요자 없음으로 지출불가
“	1회추경	○유기·유실동물 구호 및 보호 비용 지원	보조	1,235	1,235	유기동물 구조요원 부재에 따른 사업 추진불가(공무직대체)
“	1회추경	○양식수산물(송어) 재해보험금	보조	7,704	7,704	모집공고3회 추진하 였으나 사업희망자 없음으로 추진불가
“	명사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보조	140,000	140,000	모집공고 2회 추진 하였으나 사업희망자 없음으로 추진불가
“	명사비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	보조	70,000	70,000	사업포기에 따른 추진불가(공모사업)
“	사업비	○우수 농산물제 운영	보조	34,000	34,000	주산지GAP안전성분 석지원사업으로 수요자 없음으로 추진불가

※ 기준 : 100만원이상 사업

【일반회계 자체사업 불용액 현황(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 서	세부사업명(예산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합 계	14건	10,636,841	7,579,804	1,572,451	1,484,586	
기획 담당관	송무관리(305-01) (본예산 150,000)	150,000	41,469		108,531	72.4
총무 담당관	자치행정운영(207-01) (명시 22,000 변경사용 60,000)	82,000	20,240		61,760	75.3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401-01) (추경1회 100,000 추경2회 30,000)	130,000	47,896		82,104	63.2
주민 복지과	복지회관 관리(401-01) (본예산 30,000 추경1회 386,000 추경3회 32,400)	448,400	375,025		73,375	16.4
“	출산축하금 지원(301-01) (본예산 300,000)	300,000	185,500		114,500	38.2
교육 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301-10) (본예산 1,265,300 추경3회 △60,000)	1,205,300	1,095,902		109,398	9.1
문화 관광과	문화유적지 정비사업(403-02) (명시이월 340,000)	340,000	228,275		111,725	32.9
“	관광자원 유지관리(401-01) (명시이월 774,844 본예산 105,000 추경1회 390,900)	1,270,844	775,900	268,071	226,873	17.9
환경 위생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307-05) (본예산 1,140,000)	1,140,000	1,088,653		51,347	4.5
산림과	산양삼 클러스터 생산단지조성(401-01) (명시이월 568,649)	568,649	264,073	226,678	77,898	13.7
도시 주택과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401-01) (명시 2,187,391 사고 722,128 본예산 730,000 추경1회 546,000 추경3회 △20,700)	4,164,819	2,855,757	1,077,702	231,360	5.6
“	소규모 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 (401-01) (본예산 500,000)	500,000	448,353		51,647	10.3
시설 관리과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401-01) (명시이월)	90,000	0		90,000	100
농업기 술훈터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308-07) (본예산 51,025 추경2회 195,804)	246,829	152,761		94,068	38.1

※ 인건비(공무원, 공무원직) 제외

□ 문제점

- 편성된 세출예산은 적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홍보대사 및 SNS 서포터즈 활동비 외 35건 11억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5천만원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도 14건에 15억 여원에 이르고 있음.
-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수요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정리 되지 않아 송무관리,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1억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부사업은 추경에 증액된 예산액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운영이 확인되었음

□ 개선 권고사항

-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감편성하고, 2019년도 결산분부터 불용액 과다 발생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예산이월 최소화 방안 강구

□ 현 황

【최근3년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증감액	건수	금액	증감액
계	259	106,302,931	205	77,261,740	△29,041,191	256	92,885,776	15,624,036
명시이월	169	48,049,728	128	41,708,020	△6,341,708	152	60,203,455	18,495,435
사고이월	53	6,427,549	54	8,756,543	2,328,994	78	14,546,861	5,790,318
계속비이월	37	51,825,654	23	26,797,177	△25,028,477	26	18,135,460	△8,661,717

구분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예산현액대 비율(%)
2019년도	626,704,228	518,499,608	92,885,776	14.82%
2018년도	563,228,611	470,257,955	77,261,740	13.72%
2017년도	632,013,010	505,386,556	106,302,931	16.82%

【부서별 이월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248	92,885,776	60,203,455	14,546,861	18,135,460
기획담당관	1	300,000	300,000		
총무담당관	2	737,948		737,948	
올림픽기념사업과	5	321,940	92,985	228,955	
주민복지과	11	1,986,096	1,786,708	199,388	
종합민원과	2	22,692	13,692	9,000	
재무과	1	25,000	25,000		
문화관광과	40	16,288,419	7,766,242	1,418,173	7,104,004
일자리경제과	16	8,075,298	7,893,399	181,899	
환경위생과	22	5,895,349	2,729,597	617,671	2,548,081
산림과	14	4,820,972	3,800,313	1,020,659	
안전건설과	39	14,557,027	7,342,081	2,020,843	5,194,103
도시주택과	16	17,056,330	13,212,821	1,809,594	2,033,915
시설관리과	10	6,303,678	6,303,678		
상하수도사업소	6	2,331,798	1,076,441		1,255,357
농업기술센터	63	14,163,229	7,860,498	6,302,731	

※ 명시·사고이월 중복되는 사업 : 8건

□ 문제점

- 2019회계연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929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56억원(20.2%)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로는 도시주택과 171억, 문화관광과 163억, 안전건설과 146억, 농업기술센터 142억원 등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 준공기간미도래, 선행절차이행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예산의 증가는 예산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이월예산 증가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투자사업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9년 결산분부터 적용되는 이월액 최소화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지급 정책 등 변경된 정부 재정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당해연도 편성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고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참고자료】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8. 예산집행 노력	<p>①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총액 * 불용률 = 불용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불용액은 집행잔액 총액(집행사유 미발생, 세출절감, 낙찰차액, 일반·재난예비비 등)을 말한다. 다만,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불용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보며, 201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p> <p>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 5% * 이월률 = 이월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재해복구예산으로서 하반기에 교부되는 예산 중 이월되는 예산,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 미교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라 이월되는 예산은 각각 예산현액 및 이월액에서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201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①, ②는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p>

<p>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지방재정 신속집</p> <p>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송고시간 2019. 11. 05 21: 04 2면 댓글 0</p> <p>오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많이 남기는 경우 '통교부세'에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해 사회간접투자(SOC) 투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가 남은 예산을 강제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p> <p>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p> <p>행안부는 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을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해 지역사회에 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연말에 남은 돈이 많은 경우 페널티를 부과해 집행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p> <p>행안부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에 이월불용액 비율 참고지표로 활용해왔으나 2019회계연도부터는 본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p> <p>평가 결과 불용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덜 주도록 페널티를 둘 방침이다.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 이월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반대로 보통교부세 가산해 산정하는 인센티브를 준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일보(2019.11.05.)</p>	<p>'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p> <p>정부 재정집행 효율화 위해 첫 반영</p> <p>입력 : 2019-11-05 17:58 수정 : 2019-11-05 18:39</p> <p>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p> <p>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주기로</p> <p>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p> <p>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 재정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배분하는 방식의 유인책은 있었지만, 보통교부세에도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신문(2019.11.05.)</p>
---	--

5. 국도비 반납금 최소화 노력

□ 현 황

【최근3년간 국도비 반납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국도비 확보액	176,518	105,183	142,106	
국도비 반납액	2,856	2,637	3,930	
반납 비율(%)	1.62%	2.51%	2.77%	

【2019회계연도 국도비반납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지출잔액 (보조금반납금)
합 계		36,393,476	32,308,775	407,252	3,677,449 (2,622,252)
올림픽기념 사업과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보조)	1,000,000	873,305		126,695 (89,669)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지원(보조)	3,706,066	3,341,317		364,749 (327,938)
“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보조)	21,669,573	21,415,061		254,512 (234,151)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	471,503	399,653		71,850 (53,888)
“	노인일자리 사업 특별지원(도비)	691,930	591,465		100,465 (67,746)
“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도비)	252,000	61,250		190,750 (133,525)
일자리경제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비)	1,641,648	1,178,760	73,619	389,269 (272,488)
환경위생과	슬레이트처리지원 (보조)	487,000	325,843		161,157 (80,578)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1,203,020	637,565	333,633	231,822 (167,782)
안전건설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도비)	584,000	0	0	584,000 (292,000)
보건의료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보조)	1,021,928	512,544		509,384 (427,884)
농업기술센터	조건불리직불금(보조)	2,540,138	2,104,161		435,977 (366,221)
“	토양개량제 지원(보조)	259,017	187,901		71,116 (52,672)
“	농기계공급(도비)	865,653	679,950		185,703 (55,710)

□ 문제점

- 매년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나 전년보다 13억원이 증가한 39억원의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와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자가 없는 경우도 반납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예산전용 과다 증가

□ 현 황

【최근3년간 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예산전용	14	325,065	19	245,511	32	1,344,240

【2019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조직	과 목		예산액	감액 증액	승인 일자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문화관광과	문화콘텐 츠홍보	201-01	350,000	△50,000	07-23	계촌마을 클래식거리 축제지원 예산확보	
	문화예술공연사업	307-04	140,000	50,000			
“	문화재보수정비 (도비)	402-02	716,000	△100,000	07-15	상원사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예산과목 해소를 위한 전용	
		307-02	0	100,000			
일자리경제과	진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7-01	200,000	△200,000	10-22	진부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	
		403-02	0	200,000			
환경위생과	유해야생동물관리	301-12	400,000	△100,000	11-18	주민수요 증가에 따라 마을 단위 피해예방시설 추가설치 예산확보	
		401-01	245,000	100,000			
산림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보조)	402-02	1,050,000	△210,000	02-13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연계 발굴된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등의 용역 추진 예산확보	
		207-01	20,000	210,000			
도시주택과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보조)	307-02	265,568	△265,568	06-20	군직영 대중교통 (공영 마을버스)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과목 해소	
		201-01	0	265,568			
“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보조)	307-02	320,000	△54,432	06-20		
		101-04	0	54,432			
“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보조)	405-01	280,000	△18,000	06-20		
		101-04	54,432	18,000			
“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보조)	405-01	262,000	△68,000	06-20		
		201-02	0	68,000			
도시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민주택지원	201-01	61,551	△60,000	02-12		국민주택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 과목 해소를 위하여 전용
		401-01	0	60,000			

※ 기준 : 5천만원 이상

□ 문제점

- 최근3년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는 32건 13억원을 전용하여 전년대비 13건 11억원(447.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용사유는 대부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였거나 예산과목 착오 편성에 따른 과목해소, 새로운 수요발생에 따른 예산확보 등으로 예산전용의 과다 증가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세출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어 예산전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고,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경예산을 통하여 조정 승인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함.

7. 예비비 지출제한 준수

□ 현 황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임.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비비에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2019년	1,921,182	658,414	207,025	428,403	22,986

《예비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지출결정일	이월사유
합 계	491,410	63,007	428,403	0		
소하천(세천) 수해복구사업	399,805	35,142	364,663	0	2019-10-25	절대공기 부족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91,605	27,865	63,740	0	2019-10-25	준공기한 미도래

※ 지출액 : 실시설계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관급자재대 등

□ 문제점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921,182천원이며, 이 중 658,41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07,025천원을 지출하였음.
- 그러나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사업 중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소하천(세천) 수해복구,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은 다음연도이월액 428,403천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역은 위와 같음.

□ 개선 권고사항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소하천(세천) 수해복구사업 외 1건은 2019년 10월 25일에 지출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시설공사 발주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됨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제한을 준수하는 등 예비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함.

8.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2019년 예산의 성과목표 및 성과달성도는 다음과 같음.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
19	69	135	27	20	70	52	38	28

- 정책사업목표 설정은 각 부서별(실·과·담당) 업무중 대표적인 주업무, 주시책, 주사업 위주로 설정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업무를 혼합하여 설정함으로서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못함.
- 정책사업 목표중 성과지표(단위)와 측정산식(방법)은 가급적 사업량, 사업비 위주의 수치로 계량화 설정되어야 함에도 상당부분 백분율로 표기함으로서 달성도 판단이 모호하며, 단위사업 주요성과 표기에 있어 수치 아닌 서술화 표기를 함으로서 성과도 판단이 미흡함.

□ 개선 권고사항

- 정책사업 목표설정에는 각 부서별(실·과·담당)로 대표적인 주업무, 주시책, 주사업 위주로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 정책사업 목표중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은 백분율 표기를 지양하고 수치화 할 것이며, 단위사업의 주요성과 표기 또한 객관적인 수치로 기재 바람.
- 부서별 실무자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시 모든 부서가 일원화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함.

1. 운용 실효성 미흡 특별회계 폐지

□ 현 황

【특별회계 폐지현황】

특별회계명	설치목적	설치연도	폐지연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2005	2018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의 효율적 시행	1977	2019

□ 폐지이유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특별회계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재원인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등이 부족하여(연간 세입 8억원 내외)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미흡함.

○ 주택사업특별회계

- 국민주택 건설·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해 1977년부터 운용해 왔으나, 현재 세입재원이 미미하고,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미흡함.

□ 감사자 의견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기타특별회계 운영 준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각 회계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운용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2018년)와 주택사업특별회계(2019년)를 각각 폐지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음.